

# 심사보고서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11. 12
- 나. 제출자 : 최광식 의원의 5인
- 다. 회부일자 : 1996. 11. 12
- 라. 상정일자 : 1996. 11. 15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최광식의원)

### 가. 제안이유

서산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직제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중

- 총무위원회 소관에 정책개발담당관, 시립도서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를 삼입하며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사회과, 가정복지과와 종합사회복지관을 삼입하고 청소과를 삭제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산시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직제를 의정업무 수행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것으로 사료됨.

## 4. 주요질의.답변

없음

## 5.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

#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발의년월일 : 1996. 11. 12

발 의 자 : 최광식 의원  
외 5인

## 1. 제안이유

서산시 직제 규칙 개정으로 신설된 직제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있어 정책개발담당관, 시립도서관, 해미읍성관리사무소를 총무위원회로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중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산업·건설위원회로 개정하며, 서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산업·건설위원회로 삼입하며 청소과를 삭제함(제3조).

##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2호중 총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다음에 '정책개발담당관'을 '문화회관 관리사무소' 다음에 '시립도서관'과 '해미읍성관리사무소'를 삽입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3호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같은조 같은항의 3호중 '환경보호과' 앞에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상수도사업소'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삽입하며 '청소과'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 략</p> <p>② 생 략</p> <p>1. 생 략</p> <p>2. 총무위원회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u>민방위과</u>,  <u>사회과</u>, <u>가정복지과</u>, 보건소, 대산                      출장소,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3. 산업. 건설위원회                      환경보호과, <u>청소과</u>, 산업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지역                      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수도과, 교통행정과, 지적과, 농촌                      지도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u>시행하되 1995년7월1일부터 적용한다.</u></p> <p>② 생 략</p>	<p>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총무위원회                      .....                      ..... <u>정책개발담당관</u>,                      .....                      ..... <u>민방위재난관리과</u>,                      .....                      ..... <u>시립도서관</u>, <u>해미읍성</u>  <u>관리사무소</u> .....</p> <p>3. 산업. 건설위원회  <u>사회과</u>, ..... <u>가정복지과</u>,                      .....                      .....                      ..... <u>종합사회복지관</u>                      .....</p> <p style="text-align: center;">○ ————— ○</p> <p>부 칙</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u>시행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